

의안 번호	776
----------	-----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10. 7. 7(수)
-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0. 7. 7(수)
- 위원회심사 : 2010. 7. 19(월)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일치시키고, 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및 별지서식을 행정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조문 일치(안 제2조,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별표5)
-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근거법령 삽입 및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5조의 2, 제9조, 제17조)
- 행정서식 설계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4. 근거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식품위생법」 제36조, 37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서

○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인용 조문 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과,

- 기타 조례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법령 및 자구를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연혁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나. 폐기물의 발생이나 배출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
 - 다.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09.8.7, 2010.1.15>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한국환경공단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압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분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綠肥)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연혁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